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5.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25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용품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법령기준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안 제5조)

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작·배포 사항 추가

(안 제16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3. 16. ~ 2017. 4. 5.)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구 조례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  
으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2항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제2항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6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음.

- 2015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구 자전거 교통 사고는 337건이 발생하여 4명 사망, 366명 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시설의 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자전거 수요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1.28.]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6.1.27.]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4.28.]